

2021년도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「2021년도 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. 06. 24.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- 지역 영상·영화인의 영화, 드라마, 다큐멘터리 등 영상작품 제작 기획 및 시나리오 작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의 자연자원과 문화, 역사, 생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토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

2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21.11.30.까지
- 사업내용

지원분야	지원장르 및 편수	지원내용
제주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지원	장·단편 영화, 드라마, 다큐멘터리 등 3팀 내외	- 작품 기획·개발 관련 체재비(일비) 지원 · 1일 최대 10만원(2인 13만원, 3인 15만원) ※ 최대 3인, 29박 30일 이내 지원

○ 신청자격

- 당해 사업연도(2021.01.01.)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 중 영화, 드라마 등 영상 제작의 경험이 있는 제작자, 감독 및 작가

※ 도내 지역 또는 학교 출신자, 명예도민증 또는 재외도민증 소지자 포함

- 작품기획, 제작, 집필계약서 및 이와 동등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

※ 팀 구성 신청 가능하며(최대 3인), 팀·개인·작품별 1회만 신청 가능

3.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

○ 지원조건

- 선정발표 이후 2021.10.31. 이전까지 원하는 일정에 기획개발을 시행하고, 시행일에 맞춰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(이하 진흥원)과의 약정체결을 완료해야 함

※ 시행일정은 사전에 반드시 진흥원에 알려야 하며,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음

- 정산자료는 기획개발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함
- 결과물(시나리오)에 대한 작품 제작 시 작품의 홍보물 및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을 명기

※ 작품 제작 시 사전에 제작일정 및 내용을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

○ 참여제한

-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촬영예정이거나 이미 촬영이 개시된 프로젝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
- 제주특별자치도(산하 유관기관 포함)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기획개발 지원을 받은 경우(중복지원 불가)
- 신청일 기준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단체(개인)로써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
-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
※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4. 지원절차



5.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

- 접수방법 및 기간 : 이메일을 통한 수시 접수
 - 진흥원 홈페이지(www.ofjeju.kr)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 참조
 - ※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, 반드시 접수 전 담당자 문의 필요
- 접수 및 문의 : flyjfly@ofjeju.kr / 064-735-0623
- 제출서류

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각 1부	- 소정양식 [붙임1], [붙임2] - 양식 외 내용(별도 기획안 등)은 별첨가능
시나리오	1부	- 초고 이상 집필된 시나리오 - 다큐멘터리 영화의 경우 가원고(구성안) 가능
사업자등록증	1부	- 개인창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
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각 1부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1부	- 소정양식 [붙임3]
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	각 1부	- 주요계약서(저작권, 배급, 방송편성 등),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등
※ 모든 서류는 PDF 파일 또는 스캔본을 파일 형식으로 제출		

※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, 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

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

6. 심사일정 및 방법

- 심사일정 : 수시 시행
- 심사방법 : 전문 심사위원 구성 후 서류심사
- 심사기준 : 주제의 명확성, 독창성, 제작실행 가능성, 지역성(제주 관련 내용), 제주 로케이션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심사

7. 보조금 교부·집행·정산

- 사후 지원방식으로 기획개발이 종료되고 정산자료 제출(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)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지원금 지급
 - 사용영수증 : 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(사업자) 인정 (간이영수증 불인정)

- 정산항목 : 영수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업장에 한하여 숙박식비, 대여료, 유류비, 교통비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
- ※ 항공료, 유흥업소 이용, 과태료, 담배, 술, 물품 매입 등은 정산이 불가하며 이상의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 전체 불인정

○ 정산자료 제출

- 진흥원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
- 체재비 집행내역 및 영수증
- 제주에서 작업한 결과물(시나리오/다큐멘터리의 경우 구성안 제출)
- 헌팅 및 자료조사 시행 시 스틸컷(장소당 5장 이상)
- 통장사본(별도의 통장 개설 후 사용 추천)

8. 기타사항

○ 유의사항

- 신청자가 응모 자격·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
-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
-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, 추가 자료는 기 제출된 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

○ 선정취소

- 기간 내에 기획개발 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
- 불성실한 준비,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
-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(선정 및 지원금 지급 후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)
- 당선 작품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
- ※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

※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봄

※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